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

(양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의의원 : 양은숙 의원,

서도원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
나. 시행계획 및 기반조성, 지원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)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추진결과,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
2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공고 및 심사·선정에 관한 사항
3.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,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

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)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1. 노인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사업단 설립·운영
2. 노인 공익활동사업
3. 노인 역량활용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등)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1. 노인생산물 판매촉진 등 사업
2. 교육
3. 홍보
4.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예산지원)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이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이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 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법률)」(2023. 10. 31. 제정, 2024. 11. 1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일자리”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,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.
2. “노인사회활동”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”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.
4.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”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,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5.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”(이하 “노인”이라 한다)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·보급사업, 현장의견청취·조사사업, 교육·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·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,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

알선하는 기관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 - 2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, 정보 제공
 - 3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- 4.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
 - 5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」

비용추계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노인일자리 사업 일체
- 나. 지원목적: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
- 다. 지원대상: 사업별 상이
- 라. 소요예산: 연간 1,032백만원
- 마. 산출내역: 군비가 투입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4개

2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 제정 이전 상위법령 근거를 통한 기 사업 실시 중

3. 관련조문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」 제7조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노인 대상
- 나. 추계 결과: 2025년 소요예산 1,032백만원
- 다. 재원조달방안: 군비

5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사업명	사업비	사업내용	참여인원
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사업	414,000천원 (군비 100%)	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월 활동비 10만원 정액 지급	345명
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사업	27,000천원 (시비50%,군비50%)	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월 10회 20시간 근무시 월 5만원 지급	45명
군 특화 노인일자리사업	370,700천원 (군비 100%)	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월 60시간 이상, 월 76만원 지급	94명
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	234,488천원	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일 4시간 이상, 월 209일 이상 근무 시 최대 10만원 보조	80명
군비 총 소요예산	1,032,688천원		

작성자

소속 및 직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명(연락처)

양은숙 (☎ 2048)